

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출년월일 1992. 6.

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(1991.12.31 법률 제4347호)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#### 가. 의사국의 조직(안 제3조)

- 의사국장 (지방서기관)
- 의사국의 하부조직
  - . 의사과 (과장: 지방행정사무관)
  - . 의안담당관 (지방행정사무관)
  - . 의안연구관 (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)

#### 나. 사무직원의 정수 (안 제4조)

- 지방공무원 14명

#### 다. 직원의 파견요청 근거 명기 (안 제5조)

#### 라. 조례시행에 따른 규정제정 근거 명기 (안 제6조)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(이하 "의사국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직무)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외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3 조(조직)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,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,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 4 조(사무직원의 정수)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,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.

제 5 조(직원의 파견 요청)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6 조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별 표 】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

| 직 급 별                 | 정 수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14  |     |
| ○ 일반직 계               | 7   |     |
| 지방서기관                 | 1   |     |
| 지방행정사무관               | 2   |     |
| 지방행정주사                | 2   |     |
| 지방행정주사보               | 2   |     |
| ○ 별정직 계               | 1   |     |
| 5 급 상 당               | 1   |     |
| ○ 기능직 계               | 6   |     |
|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<br>(속기요원) | 2   |     |
|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         | 2   |     |
| 지방운전원 10등급            | 2   |     |